

국가보안법 사건 중심으로 바라본 검찰 공안부

박성희(민가협 간사)

1. 들어가는 말

그동안 국가보안법 적용기관들은 구체적 사례마다 국가보안법 폐지의 주장을 촉진할 만큼 많은 문제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 법조항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자의적 적용을 부추기고 있는 점과 더불어 제3장에 규정하고 있는 “참고인 구인·유치제도(제18조), 구속기간 연장(제19조), 공소보류(제20조)” 등 형사소송규정들이 적용기관의 특수한 권한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사건들은 주로 특수수사기관(경찰 보안수사대,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 등)에서 다뤄져왔는데 이러한 기관들의 과도한 인력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남용을 부추겨왔고 중립적 시각에서 이를 바로 잡아 줄 검찰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검찰청에 공안부서를 따로 두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실태를 살펴보면 국가형벌권의 최종 완성자 역할을 자임하는 검찰기구에 요구되는 법 적용의 신중성, 중립성은 찾을 수 없다.

2. 검찰 공안부의 국가보안법 사건 실태

과거 민주화운동 시기에 정치적 혼란 시기 때마다 안기부, 기무사 등 공안수사기구들이 공안정국 조성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민주화운동 인사들을 탄압할 때, 검찰은 자기역할과 책임으로서 이를 제한하거나 바로잡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부처간 관례적인 회합을 통해 공안정국을 조성할 때 공안수사기구들의 불법 초법적인 행태를 묵인하고 공안정국 조장을 합리화시키기도 했다. 특히 97년부터는 한총련 좌익합동수사본부 등 검찰이 앞장서서 공안정국을 지휘하고 조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의 지탄이 높아지자 공안대책협의회로 법제화 한 이후 현재까지도 공안 정책들을 지휘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장 상의 모두진술은 천편일률적이어서 개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되거나 실형선고가 유보되는 사례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굳이 구속하거나 기소할 사안이 아님에도 검찰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 한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직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례를 통해 검찰 공안부의 실태를 살펴보자.

가.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 피의자 신문조서 그대로 공소사실

국가보안법 사건은 객관적 증거보다는 피의자의 자백을 혐의입증의 주요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자백

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관행이 자리잡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이 필연적으로 선행되었다. 피의자가 검찰에서 사법경찰관리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등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했으나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수사기관들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들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태도가 검찰의 관행으로 자리잡았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관행은 7,80년대 조작간첩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르러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태환씨(제7조 찬양고무, 2000년 5월 구속기소)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당하면서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검찰에 호소했으나 이유없다고 각하되었다. 권정기씨(2002년 10월 불구속 기소, 제7조 찬양고무)와 안덕영(2002년 5월 구속기소, 제 6조 회합통신)씨는 경찰청 산하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고의적인 강압적인 밤샘수사로 고통받았으나 검찰에서 문제제기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한다.

나. 검찰이 피의자를 위협, 협박한 사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강압적 수사를 밝히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사례¹⁾도 있어 검찰의 역할에 불신과 냉소를 자초해 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특별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²⁾. 따라서 피의자에 대한 혐의 유무 사실, 혐의자에 대한 유리·불리한 자료들에 대한 객관적 조사 과정이후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함에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피의자에 관한 한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리 조사 과정과 다른 질문, 다른 조사를 받았다는 진술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다. 천편일률적인 모두진술

검찰이 기소 근거를 밝히는 공소장의 모두진술은 개개 사건들에 대한 형사소추 책임자로서 검찰의 판단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정도로 천편일률 적이다. 또한 안기부 등의 수사 의견서와 검찰의 공소장이 글자 한자 다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³⁾. 이를 통해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검찰의 냉전 시각과 6.15공동선언 등 시대적 흐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종인(1984년 안기부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에 대한 모두진술

“북한 괴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그들의 기본목표로 삼아 간첩을 남파하고 대한민국내 동조세력을 부식 지하당을 구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사회혼란을 획책하여 이른바 결정적 시기의 조성을 위하여 광분하고 있으며”⁴⁾

손병선(1992년 안기부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씨에 대한 모두진술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대남적화통일

1) 최용석씨는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1985년 ‘서울대 깃발사건’ 관련자로 체포돼 검찰조사 받던 중, 담당검사인 서울남부지청 김원치 검사가 수사관인 김 모 경사에게 직접 고문을 지시한 사실을 폭로했다.

2) 형사소송법 312조 1항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3) 강용주(1984년 안기부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씨 사례, 인혁당 재건위 사례 등

4) 서울지방검찰청 공소장(1985형제27277호) 2쪽 이하

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노동자, 농민, 진보적 청년학생들이 연합하여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국주의를 축출하고 미제에 예속된 군사파쇼정권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동선전하는....5)

연덕원(2004년 8월 노원경찰서 연행,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씨에 대한 모두진술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하고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전체하에 남한정권은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인민을 수탈, 탄압하는 파쇼독재정권이고 남한의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들은 반제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전개하여 미제국주의와 독재정권을 타도하라고 선전선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6)”

라. 높은 기소율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의무에 더해 기소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특수한 지위를 염두에 둘 때 수사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그대로 공소사실로 수용하는 검찰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수사기관들의 수사관행을 용인해주거나 강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자의적 남용을 부추기는 폐단을 저질러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율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도 이러한 검찰의 인식과 수사관행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국가보안법 사건 기소율 100%7)

연도	구분	구속인원	기소유예 (비율)	기소인원 (기소율)	실형 (실형율)	집행유예 (집행유예율)	선고유예 (선고유예율)
1996		465	18 (3.9%)	438 (94.2%)	95 (21.7%)	325 (74.2%)	14 (3.2%)
1997		641	25 (3.9%)	616 (96.1%)	88 (14.3%)	494 (80.2%)	16 (2.6%)
1998		465	17 (3.7%)	446 (95.9%)	40 (9%)	356 (79.8%)	6 (1.3%)
1999		312	23 (7.4%)	287 (92%)	10 (3.5%)	231 (80.5%)	1 (0.3%)
2000(1~6)		61		56 (91.8%)		30 (53.6%)	

마. 기소권 남용

한편 거의 100%에 이르는 기소율과 비교할 때 집행유예 등으로 실형이 유예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법원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 전향적인 시각을 갖췄다고 보기 이전에 객관적 사

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만 작성, 공소장(92형제 99863호) 5쪽이하

6)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한석리 작성, 공소장(2004형제 42514호) 2쪽 이하

7) 민가협,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실태(국가인권위 연구용역 보고서)>, 2004.

실에 입각해 판단할 때 검찰이 실제적 진실을 파악하기보다는 무리하게 기소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권 남용 실태를 확인시켜 준다. 이는 검찰의 사법인력을 낭비하는 결과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굳이 구속, 기소하지 않아도 될 사안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는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⁸⁾

구분 연도별	자유형	집행유예	기타	계	집행유예율
1992	138	162	17	317	51.1%
1993	92	120	8	220	54.5%
1994	93	217	7	317	68.5%
1995	59	146	7	212	68.9%
1996	98	176	53	327	53.8%
1997	179	324	49	552	58.7%
1998	80	239	61	380	72.5%
1999	43	224	42	309	72.5%
2000	31	114	44	189	60.3%
2001	25	92	9	126	73%

바. 민주이념연구소

한편 검찰 공안부는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에 그치는 것만 아니라 공안 정책 개발등 대공수사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 소속 민주이념연구소는 이같은 이유로 97년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주이념연구소는 소관사무로 1.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 2. 대공사범의 동향 및 대처방안 연구, 3. 통일정국에 대비한 공안정국 대비태세 연구,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 5. 대국민홍보, 안보의식 고양, 6. 공안수사요원 교육, 7.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민주이념 연구소 운영규칙 제3조, 대검훈령 제75호 1997.1.10.) 민주이념연구소는 설치된 이래 문건, 도서, 신문광고, 비디오테이프, 노래가사 등을 분석해 이적성이 인정¹⁰⁾된 건에 대해서는 산하

8) 위의 책

9) 민주이념연구소 운영규정 <제정 대검훈령 공기 제75호, 1997. 1. 10>

제1조 【목적】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전술의 체계적 연구와 대공사범의 동향 분석 및 대처방안 등을 연구하여 검찰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민주이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구성】 ①연구소는 소장, 부소장, 자문위원과 상임 및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소장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부소장은 공안기획관이 된다.

10) 민주이념연구소 설치이래 "이적표현물 분석 현황"을 살펴보면 1997년 : 164건 분석(이적성 인정:79건, 이적성 부정:64건, 분석불요등:21건), 1998년 : 318건(인정:26건, 부정:8건, 불요등:284건), 1999년 : 436건(인정:36건, 부정:15건, 불요등:385건), 2000년 : 2건(인정:2건), 2001년 : 108건(인정:2건, 부정:9건, 분석불요등:97건), 2002년 : 17건(인정:7건, 부정:10건)으로 나타났다. 2002년 국정감사 자료, 법제사법위 제출자료 위의 책 인용.

검찰청에 수사지휘를 하게 하거나 국정원 등 의뢰기관에 통보하고 있다.¹¹⁾

사.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구속자 가운데 일부는 출소 이후에는 보안관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이중처벌이고 사상통제이다. 따라서 검찰 공안부는 국민의 의식, 사상 통제 역할에 검찰 공안부가 실제적인 지휘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할 것이다.

3. 맺음말

국가보안법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검찰 공안부는 국가형벌권을 집행하는 독립관청으로서, 검찰에게 부여된 권한을 악용해 왔다. 주요 사안이었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살펴보면 검찰공안부는 다양한 논의와 토론,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들을 '공안'의 이름으로 단죄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통제하고 제한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를 해 온 것이 확인된다. 그 결과 우리사회의 전반에 극단적인 냉전논리를 강요되고 민주주의를 질식시켜 온 근원이 되었다.

법무부는 검찰 공안부서를 축소할 계획임을 밝혔다¹²⁾. 그러나 단순히 검찰조직개편 차원에서 공안부서를 축소해 기능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동안 공안부서의 폐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공안부서와 산하 민주이념연구소 등은 당장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공공의 안전', 특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공안 시각을 강요하고 기본권을 제한해 온 우리 사회 잘못된 관행들에 제동을 걸고 국가 중심적 사회에서 개개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일이다. <끝>

11) 위의 책

12) 공안부서 축소·폐지바람부나 '법무부, 17개 공안과 중 16개 폐지 검토... 시민단체 '환영'
2004.6.7자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

공안부 토론문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법률원의 행정장관

1. 공안부의 실태

- 공안의 교과서적인 정의는 '공공의 안전' 또는 '사회의 안전'을 의미한다. 형법상 공안을 해하는 범죄로는 범죄단체구성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등이 전형적인 범죄로 되어 있다.
-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실무상 공안사건으로 분류되는 사건은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공안의 영역이 국가적 사회적 안전의 부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반정부활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을 주도해왔던 영역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또 그 분야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고 실제 행해지고 있어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과 정보수집·관리를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이는 공안부의 활동이 공안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종래의 정부비판세력(의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들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1과·공안제2과 및 공안제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②공안제1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1. 대공사건, 남북교류관련 사건, 사회단체·종교단체 및 정치단체관련 공안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공안제2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1. 선거사건, 학원·교육단체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공안제3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1. 노동·외사 관련 사건 그 밖에 집단민원 등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삭제 <1998.2.28>

⑥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1992.8.31, 1996.3.11, 1998.2.28>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2.2.4>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관할 경찰서의 정보과는 관내 주요 노동조합이나 간부들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고 있다. 가령 서울특별시경찰청 정보관리부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보자. 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 분석 등이 주요한 업무로 되어 있으며 실제 산하 각 경찰서의 정보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관내 노동조합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아니면 주요인사들과 친분관계를 이용하여(친분관계는 주로 집회신고관리과정이나, 쟁의행위 과정 등에서 교류를 통해 맺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비정규 마라톤대회가 열린 4. 27.에 한강시민공원에 영등포 경찰서 정보과 형사 아무개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와서 행사에 참가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한다) 정보를 수집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 동 시행규칙 참조]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

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이렇게 수집한 정보들이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검찰 공안부로도 보고되며 최종적으로는 대검 공안부(공안기획관, 공안 3과-노동담당)로 정보가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좀 더 정확한 정보와 비밀스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청이 행해지기도 한다.

[사례] 한국일보, 2002-01-08 (사회) 29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이승필 전 금속노조위원장의 집인 창원시 사파동 동성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싸던 도중 냉장고 아래에서 소형 도청기가 발견됐다" 고 밝혔다. 이 도청기는 가로 3.3cm, 세로 4.5cm, 두께 1.5cm 크기로 길이 70cm의 줄 안테나가 투명 테이프에 감긴 채 냉장고밑에 놓여 있었다고 이씨는 밝혔다]

-그리고 정보과의 주요 업무인 집회신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로서 가능한 집회임에도 꼬투리를 잡은 뒤에 마치 안 되는 것을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하여 다른 정보를 취득한다든가, 경찰 내부의 정보 예를 들어 구속가능성 등을 흘려주면서 다른 정보를 얻어내려 한다.

-그리고 검찰 공안부의 노사관계 개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공안부에 법원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 사용자가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가처분(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의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독촉한다(결정이 내려지면 공권력을 투입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의 노동쟁의현장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정보과 형사로부터 수시로 받으면서 경찰력 투입 등 여러 가지 지시를 사실상 공안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인데, 공안부 검사들의 노동조합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파업을 유도해서라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노조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과 노사관계개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사례] 1998년 발생한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파업은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진형구가 지휘하여 공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집행부는 제거된다는 선례를 남기려는 목적 아래 회사로 하여금 교섭을 불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고 불법직장폐쇄를 강행하게 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한 것이었다. 위 진형구의 취중 실언으로 그 진실의 일부가 드러나자¹⁾ 특별검사

1) 한겨레신문 1999-06-08 자 보도는 다음과 같다. [진 검사장(6일 대전고검장 승진)은 이날 기자와 만나 "(지난해 11월) 조폐공사의 파업은 공기업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우리(검찰)가 유도한 것이었다"며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과 논의한 뒤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옥천조폐창의 기계를 (경산으로) 옮기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계획은 공안부 이아무개 과장이 만들도록 했고, 지금도 그 보고서가 남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조폐공사 노조는 이미 700명의 인원을 감축한 회사쪽이 이사회를 열어 예정보다 2년 앞당겨 옥천

제까지 도입되었으나, 국가공안기관들의 조직적 개입사실은 묻혀 버리고 몇 몇 개인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축소되어 수사는 종결되고 말았다.

2. 범집행의 현실

가. 황당한 일들

- 지역건설노조 단체협약 전임비 상습공갈죄 사건

[첨부자료 참고]

- 학습지교사로서 특수고용형태 비정규 노동자인 재능교사노동조합에 대하여 서울지검은 같은 공안검사가 한번은 노동자가 아닌데 파업을 했다고 업무방해라며 벌금 300만원, 비슷한 시기에 또 한번은 노동자임을 전제로 해서 노동조합 규약시정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벌금 70만원

- 고려개발노동조합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증명할 회사의 회의 내용 등이 담긴 인사노무담당자의 수첩을 복사해서 고발하였더니,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에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계속 재촉하더니 무혐의 처분, 고발한 노동조합 간부는 다른 사람 몰래 수첩을 복사해서 가져갔다고 하여 건조물 침입, 복사문서횡령죄로 벌금 300만원 부과

나. 범집행의 공정성 문제 심각한 상황

○ 노태우 정부에서 구속된 노동자수가 1,973명이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구속된 노동자수는 632명이며, 김대중 정부에서 구속된 노동자수는 866명(1998년 219명, 1999년 129명, 2000년 97명, 2001년 221명, 2002년 200명)이었음(민주노총 자체 통계로는 896명임).

○ 이에 반해,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구속된 사용자수는 62명이며, 이 중 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로 구속 수사를 받은 경우는 단 9명에 불과(1998년 1명, 1999년 5명, 2000년 1명, 2001년 2명, 2002년 0명-대검찰청 자료 부당노동행위사범 구속자 현황 2003)하여 구속된 사용자의 대부분은 다수의 노동자에 대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이고,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경우는 드문 실정임.

조폐장을 조기 폐쇄하기로 하는 등의 결정을 하자 이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진 검사장은 이어 "조폐공사 파업에 대한 대응을 통해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검찰)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쪽(노조)이 쉽게 무너져버려 싱겁게 끝났다"며 "조폐공사가 잘 됐으면 서울 지하철 파업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소가 들어오는 즉시 출석요구, 체포영장 발부, 공권력 투입, 집행부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노사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미 구속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거나, 여전히 업무방해죄는 최고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진행되고 있음.

○ 부당노동행위나 임금체불 사용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나 노동조합의 고소에만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는데 그치고 적극적인 인지수사를 하지 않는 실정임. 부당노동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수적임에도 노동조합에 모든 입증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가 무혐의 처리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음. 그나마 노사합의로 고소가 취소되면 조사는 흐지부지되고 무혐의처리를 하거나,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도 합의를 이유로 기소유예를 하고 있음.

○ 또 사용주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약식기소를 하고 있어 형사제재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실정임

[2002년 사용주에 대한 사법처리 현황]

구속 6건, 불구속 40,540건 / 구공판 1,056건, 구약식 19,088건, 불기소 20,402건으로 구공판 비율 5%, 구약식 45%, 불기소 50%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도 경제력이 있는 사용주에게는 형사제재로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구약식이 대부분인 실정임

○ 한편 노동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보면 노조간부들에 대하여는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을 통하여 실행이나 집행유예 유도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벌금형)를 하고 있음. 노동계에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노조간부들은 집행유예를 통해 이후 활동에 발을 묶고 조합원들은 벌금형이라는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음.

○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12월 10일 현재 노동쟁의와 관련 구속된 노동자는 노동자대회 45명, 화물연대 파업 관련 9명, 철도파업 관련 15명, 두산중공업 파업 관련 5명, 경기도노조 4명, 공무원노조 3명, 지하철 파업 관련 3명, 현대차아산사내하청노조 2명, 기타 5명 등 200여 명에 이르고 있음. 특히 노동정책이 강경으로 돌아서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도발에 의하여 폭행이 발생한 경우나 쌍방폭행의 경우 노동자측만 일방적으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사용자측은 구속은 고사하고 많은 경우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흐지부지된다는 불만이 노동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 특히 구사대나 용역깡패가 쟁의행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데 맞서거나, 경찰의 부당한 진압으로 인

해 충돌이 발생하여 노동자측이 더 많은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구사대나 경찰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반면에 피해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만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임.

(2000년 롯데호텔 진압당시 경찰폭력 사건,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폭력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무혐의 처리한 것이 대표적임. 특히 2000년 롯데호텔 사건에서 검찰은 2명의 의무경찰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 유예하였는데, 그들은 방송에 폭력장면이 방영되어 징계를 받은 2명으로 이미 신분이 드러난 경우였음)

3. 문제점과 대안

○ 공안부가 노동사건 등을 맡고 있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공안부가 노동사건을 맡고 경찰과 검찰 공안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수집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즉 노동부가 노동정책의 수립과 노동문제 및 각 사업장의 노동쟁의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검찰 공안부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임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범죄단체 내지 잠재적인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님,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단체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헌법에서 노동 3권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 옹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노동조합을 범죄단체쯤으로 바라보는 것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음

-공안부에서 노동사건을 맡고 있는 것은 과거 정권에서 노동조합, 학원, 시민사회단체를 정권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집단이므로 정권 입장에서는 동향파악과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조직폭력배집단보다 더 컸기 때문이었다. 정권 입장에서는 매우 위험한 단체들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은 공안부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의 주된 대상은 독립운동가, 독재정권 하에서는 학생, 민주화 인사 등의 그 대상이었다.

○ 공안적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판단하기 때문에 노사간 법집행의 형평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구속자 대비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 과도한 노사문제 개입으로 노사자치를 왜곡시킨다.

○ 노동분야에 대한 정보 수집, 동향 파악은 노동부가 하더라도 일상적인 사찰 형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하며 주요한 이슈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동향, 노동쟁의사업장의 동향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하면 된다. 검찰공안부에서 주장하듯이 노동문제가 가지는 전국적 성격

과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공안부에서 계속 맡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검찰에서 할 일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할 일이므로 맡이 안 된다. 이권 학원이나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 경찰과 검찰의 노동문제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행위, 정보수집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그러한 업무를 삭제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일 수는 있으나, 잠재적인 범죄단체는 아니다. 경찰과 검찰은 손을 떼라
-경찰 정보업무도 일반 범죄정보 수집기능으로 축소해야 한다.

○ 공안부를 폐지하고 형사부내에 노동사건 전담 부서를 두면 된다. 여기에 정보수집, 관리, 분석기능을 주면 기존 공안부와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그 기능을 주면 안 된다.

○ 무조건 형사처벌로만 해결이 되지 않는 노사관계의 특수성, 형사처벌 이후에도 노사관계는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들의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 진형구 같은 검사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1.]

1. 조직구조

가. 검찰

대검 - 공안부 : 공안부장, 공안기획관, 공안 1, 2, 3과
- 범죄정보기획관과 정보제2담당관(공안관련정보 수집 관리)
지검 - 공안1, 2부 /공안과

⑦공안과(서울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안제1과 및 공안제2과. 이하 같다)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2.28>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제3조의4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제1담당관과 범죄정보제2담당관을 둔다.

②범죄정보제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경제질서저해사범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간행물·정보통신의 공개범죄정보와 그외의 각종 공개범죄정보의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③범죄정보제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대공·사회단체 및 종교단체관련 공안사건 범죄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선거·노동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원·외사관련사건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경찰

○ 관련법규 :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 시행규칙

경찰청 - 정보국 : 정보 1, 정보 2, 정보 3, 정보 4

보안국 : 보안 1, 보안 2, 보안 3

지방경찰청 - 정보관리과 : 정보 1, 정보 2

보안부 : 보안 1, 보안 2, 외사과

각급 경찰서 - 정보과

- 보안과

- 또는 정보보안과

[경찰청]

제14조 (정보국) ①정보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밑에 기획정보심의관을 둔다.

②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기획정보심의관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4. 집회·시위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5.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 ④기획정보심의관은 기획정보업무의 조정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5조 (보안국) ① 국장은 치안감 또는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5.24>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3. 북한이탈 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4.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조정
5. 보안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6.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7. 간첩등 중요방첩수사에 관한 업무
8. 중요좌익사범의 수사에 관한 업무

제24조 (공안문제연구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공안문제연구소를 부설한다.

- ②공안문제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공안문제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산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에 대한 연구 및 대응이론의 개발
 2.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관한 증거물의 감정
 3. 기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치이념 및 그 대책연구에 관한 사항
- ④소장은 연구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⑤공안문제연구소의 하부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

제11조 (정보국에 두는 과) ①정보국에 정보1과·정보2과·정보3과 및 정보4과를 둔다.

-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경찰(情報警察)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2.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3.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치안정보업무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정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배포 및 조정
 4. 정치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⑤정보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 ⑥정보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집회·시위 등 집단사태의 관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제12조 (보안국에 두는 과)

①보안국에 보안1과·보안2과 및 보안3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북한의 실상에 대한 홍보
3.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2. 불온유인물의 수집 및 분석
3. 북한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보안경찰업무

⑤보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간첩등 중요 방첩수사
2. 중요 좌익사범의 수사

[서울특별시경찰청]

제51조 (정보관리부) ①정보관리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9.12.28>

1. 정치·경제·노동·사회·학원·종교·문화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3.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제52조 (보안부) ①보안부에 부장 1인을 두되, 부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 및 그에 대한 지도·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외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6.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제31조 (정보관리부에 두는 과) ①정보관리부에 정보1과 및 정보2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1. 정치·경제·노동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2.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
3. 신원조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정보2과장은 학원·종교·사회·문화분야에 관련되는 치안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12.28, 2002.2.25>

제32조 (보안부에 두는 과) ①보안부에 보안1과·보안2과 및 의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보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첩계몽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
2. 간첩등 보안사범에 대한 수사의 지도 및 조정
3. 불온유인물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보안2과장은 간첩 등 보안사범의 수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⑤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사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2.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의 관련된 범죄의 수사 및 지도
3. 출입국자의 동태파악
4. 기타 의사경찰업무

참고자료 2.

[천안건설노조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사의 문제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고단2159, 2003고정190

1. 수사의 문제점

가. 허위 진술조서 작성

- 증인 김00 증인 정00, 증인 이00의 경찰 진술조서는 회사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거의 동일함
- 증인 김00과 증인 정00는 법정에서 증언하기를 진술조서와 달리 실제로는 단체교섭 진행당시에 그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체결된 이후에 그 현장에 발령받았다고 증언함
- 특히 증인 정00(호반리젠시빌 백석동 현장)는 서명날인 당시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진술조서

를 받으러 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진술한 것과 진술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시간이 없다며 독촉하여 하는 수 없이 서명날인을 한 것이라고 증언함(첨부자료 1.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참조)

[정00의 경찰작성 진술조서의 주요내용]

“수시로 찾아와 공갈협박”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하여 노동청에 고발하겠다고 계속하여 공갈협박하여 어쩔수 없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일을 하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찾아와서 공갈협박을 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00의 법정증언내용]

-진술조서와 달리 정00은 “저는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때 백석동 현장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말함. 즉 위 진술조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임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제시하자 “이렇게 진술한 적은 없다”

-읽어보고 서명날인했는가라는 질문에 “읽어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조사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하여 그냥 그대로 작성되었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몇 번 고쳤는데, 전체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채 조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

☞ 단체교섭과 협약을 체결할 시점에 근무도 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조서 내용이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으로 생생하게 되어 있고(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말까지 있음)당사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바쁘다며 수정을 거부하고 그대로 작성되었으며, 정작 증인들 자신은 모르는 조직가 오00이 찾아와 협박하였다고 진술되어 있고, 건설현장 사무실까지 친히 찾아가 진술조서를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이 오00을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실제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허위진술조서를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

(1) 이00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이에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경찰에서는 공소의 이00 명의의 통장으로 전임비가 입금된 점에 착안하여 위 이00도 피의자로 지목함.

- 상당수의 현장소장 등도 위 이00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함[박00(102쪽 이하), 김00(154쪽 이하), 김00(192쪽 이하), 김00(282쪽 이하) 조00(361쪽 이하), 손00(397쪽 이하)에 대

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경찰에서는 위 이00을 피의자로 소환하였고 2003. 9. 29. 위 이00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실제 이00은 통장 명의만 자신의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 단체교섭 활동 등을 위해 현장에 방문한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수사기관은 이미 이00이 현장에 와서 협박을 하였다는 식으로 진술한 피해자들을 같은 해 9. 30.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그러자 피해자들은 이제는 위 이00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처음의 진술을 번복함[박00(122쪽 이하), 김00(177쪽 이하), 김00(201쪽 이하), 김00(294쪽 이하), 조00(372쪽 이하), 손00(409쪽 이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 이00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였음이 명백함. 여러명의 현장소장들이 그저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이00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다시 이00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조서를 재작성하는 등 전체 수사과정이 수사기관의 짜맞추기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임

(2) 노선균 부위원장에 대한 피의사실의 과장

- 노선균은 2003. 8.초경 노조에 가입하여 같은 8. 18.경 노조 부위원장으로 인준되었음(검찰의 위 노선균에 대한 공소사실 참조). 그런데 피해자들 중 일부가 위 노선균이 그전부터 와서 협박하였다고 식으로 진술하였음.
- 피해자 조00는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373쪽 조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김00는 위 노선균이 2002. 8. 26.부터 2003. 9. 8.까지 찾아와서 전임비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제192쪽 김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1회 진술조서), 피해자 반00은 위 노선균이 2003. 3.경 이후 단체협약(단체협약의 체결 일자는 같은 해 5. 21.입니다)을 하자고 하면서 찾아왔다고 진술하였고(제460쪽, 반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제2회 진술조서), 피해자 함00은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제532쪽, 함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 한편 노선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2003. 8.경부터 활동하였고 노조의 업무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노선균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위 노선균은 구속이 되었음
-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측은 위 노선균이 8월 이전에는 활동하지 아니하였다는 증인으로 민주노총 충남지역 사무처장 안병일을 대동하여 담당검사를 방문하여 이를 소명하였고 그때

서야 검찰은 위 노선균이 2003. 8.경 이전에 현장에 와서 활동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를 재조사하였음

- 그러자 2003. 4. 10.경 위 노선균이 현장에 와서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피해자 조00는 위 노선균은 2003. 9.경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고 최근에 찾아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제976쪽 조00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2003. 7.초경 위 노선균이 찾아와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피해자 함00은 위 노선균은 2003. 8. 중순경에 이전에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음(제889쪽, 함00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 결국 검찰은 노선균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의 잘못을 시인하고 2003. 11. 1. 위 노선균은 검찰측의 구속취소로 석방하였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받았음

☞ 이 부분도 수사기관이 노선균을 지목하고 그에 맞추어 피해자라는 현장소장들의 진술조서를 받았음. 그에 따라 법원은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주장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함. 나중에 담당 변호인인 이민석 변호사가 검사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여러 가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그제서야 사실이 드러났고 이에 따라 이례적으로 구속취소가 이루어짐. 즉 수사기관의 수사내용 자체가 허위였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3)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자체의 문제점

1) 경찰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 중 상당수는 마치 미리 말을 맞춘 것처럼 똑같았음

- 수사기록 제243쪽 이하 이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342쪽 이하 유00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23쪽 이하 신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260쪽 이하 강00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17쪽 이하 이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49쪽 이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수사기록 제207쪽 이하 이00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와 제182쪽 이하 김00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부분

☞ 위와 같은 현상은 경찰이 미리 질문과 대답을 마련하여 놓고 피해자를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의 공정성에 크나큰 의문을 가지게 함. 그리고 이는

수사기록상 피해자 진술조서라는 것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진술하고 이것이 기재된 조서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말해주는 대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임.

2) 검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 검찰에서는 7명의 피해자(함00, 김00, 조00, 유0, 심00, 안00, 김00)에 대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중 6명에 대한 진술조서(함00, 김00, 조00, 유0, 심00, 안00)의 후반부 약 5, 6 페이지정도가 질문은 물론이고 답변까지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 특히 답변의 내용은 고도의 법지식이 없으면 표현하기 힘든 내용들로 되어 있음.

☞ 수사의 주재자인 검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위와 같이 작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반증하는 것임. 건설현장 소장들이 그저 수사기관이 미리 짜놓은 수사내용대로 응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여겨짐

2. 이 사건에 대한 몇가지 선입견-오해와 진실

가. 노조간부들이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듯한 행동을 한 것인가? 전혀 아니다. 검찰의 공소장 자체도 보면 이 사건에서 노조간부들이 했다는 “협박”은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내용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나오는 노동조합의 정의를 보면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조법 제2조 제4호 정의)”라고 되어 있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등의 문제는 조합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2002년 건설산업재해 사망자 677여명) 만일 노사간 대화와 협의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현장이라면 법에 따라 고발이라는 조치를 통해서라도 시정해야 하는 것이 노조의 당연한 역할 아닌가? 그것도 공갈죄의 협박이 되는가?

나. 돈만 받고 현장에서 노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아니다. 정기적으로 노사협

의회가 개최되었음은 물론이고 노사협의회에서 퇴직공제적용문제, 고용보험 문제, 임금지급방법 개선 등을 논의하였으며, 노조는 현장에서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는 천안사건에서 현재까지 출석한 증인들 28명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증인들은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노동조합에서 현장에 나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모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퇴직공제제도 적용 문제 협의, 환경문제 등을 협의하고, 유인물 배포 등 선전 활동, 산업안전 문제 등 일용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실제 매월 1회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업장들과 노동조합이 한 자리에 모여 산업안전교육 일정 협의, 고용보험 확대 적용 문제, 근로자대표 선임 문제, 게시판 설치, 퇴직공제제도 가입 문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 참가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첨부자료 2. 노사협의회 문서).

다.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전임비를 지급한 것이며, 본사의 승인과 본사에서 직접 지급한 경우도 많았고 매우 공개적으로 전임비가 지급되고 수령되었다. 즉 몰래 뒷돈으로 주고 받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검찰의 공소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돈을 주겠으니 단체협약을 맺지 말라는 식으로 회유하였으나, 노조에서는 분개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그러한 제안 때문에 노조가 반발하여 단체협약이 결렬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함

- 증인 함00(00종합건설)은 법정에서 매월 40만원 줄테니 단체협약을 맺지 말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그런 제안에 노조가 분개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고 증언함

- 증인 박00(00건설)도 행사가 있으면 돈을 줄 테이니 단체협약은 맺지 말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 위원장 박영재가 "무슨 소리냐.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하는 일이지, 돈이나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며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함

- 증인 이00(00건설 관리과장) 역시 전임비를 줄 테니까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노조가 이를 거절하였다고 증언함

- 증인 안00(00산업개발 관리부장) 역시 돈을 줄테니 이면합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노조 간부가 우리는 일용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것이지 뇌물이나 받는 데가 아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자고 하며 거절하였다고 증언함

<검찰 공안부 어디로 갈 것인가>

안창현 기자 / 한겨레신문 사회부 법조팀

1.

송두율 사건을 계기로 검찰 공안부가 새삼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애초 검찰은 송 교수한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년형을 구형하면서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결국 2심 재판부가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말았다. 검찰 공안부에게는 충격이었고, 국민들에게는 '이제 세상이 진짜 변했나 보다'라는 실감을 느끼게 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검찰 공안부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폐지론까지 내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어떤 선행적 결론을 먼저 내놓기보다, 검찰 공안부의 성격을 찬찬히 분석해 검찰 공안부에 대한 논의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 공안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전하고자 한다.

2.

일단 검찰 공안부를 둘러싼 논란을 역사성과 기능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고자 한다. 먼저 검찰 공안부가 이제껏 걸어온 길을 보면, 대검 공안부는 지난 72년 10월 유신헌법 제정 다음해인 지난 73년 1월 처음 설치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은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눌려 일방적인 시너 노릇을 했고, 5공 시절부터 공안사건 관련기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해 86년 건대사태, 96년 연대사태 등 공안사건 처리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정권 수호의 지휘부였기에 공안부는 검찰 조직 안에서 엘리트 코스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공안부를 거치지 않으면 검사장 승진 등 출세는 불가능했다. 당시 서울지검을 출입하는 기자들은 공안부를 최우선 취재원을 여겨 공안부장 찾는 일을 매일의 일과로 했다고 한다. 지금은 최고의 취재원으로 대우받는 특수부(대검의 중수부)는 그 다음 후순위였다.

당시 공안부는 검찰 조직의 핵심으로, 공안 즉 공공의 안전(public security)을 위한 전투의 지

휘부대 구실을 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한 공공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이었고, 스스로도 인정했듯 정권의 안정이었다는 점이다. 지금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기에 국가와 정권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없지만,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는 공안검사들한테 국가와 정권은 떨어질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이었다. 법전은 잘 외웠는지 몰라도, 정치적 상상력은 빈곤했던 것이다.

이렇게 국가와 정권을 동일시하다보니, 정권에 대한 반대 또는 위협이 되는 모든 행위는 나라를 망치는 길이라 굳게 믿고, 자랑스럽게 이를 척결하는 데 나섰다. 86년 건대사태 당시 검사들이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대학생들을 조사하고 성향 분석표를 위로 올렸고, 대검 공안부는 이를 가지고 1천명이 넘는 구속자를 선별해냈다. 나라 걱정이 앞서니 노동사건 처리도 수사지휘의 선을 넘어 '제3자 개입'에까지 나서 결국 조폐공사 파업유도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권 입장에서 이런 검찰 공안부는 너무도 편리하고 확실한 정권유지 도구였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확실한 일처리 실력을 보였고, 똑똑해 실수도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공안검사들을 어여뻐 여겼고, 공안검사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현재 공안부에 고생하는 검사들 가운데 상식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런 과거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과거가 단순히 호랑이 담배 애기가 아니라, 현재의 공안부를 규정하는 힘을 갖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공안부의 황금시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면서 완전히 옛날이야기가 됐다. 이제는 가끔 화물연대 파업이나 촛불집회 등 사회적 집단행동이 벌어짐에 따라 사법처리 방침을 내놓아야 겨우 기사가 나오는 한적한 곳이 됐다. 물론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가 있을 때면 검찰의 경우 특수부는 방학에 들어가고, 공안부가 나서 선거사범 처리에 나선다.

3.

현재 검찰 공안부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찬찬히 살펴보자. 이는 크게 세가지, 즉 대공(친북이적), 노동(학원 포함), 선거 등이다.

먼저 검찰 공안부가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노동사건이 집단행동이나 집단분규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앞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무튼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이 전투적이고 이념 지향적이라 예측불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촛불집회처럼 언제든 집단행동이 돌출하는 역동적인 나라에서 집단행동의 흐름을 미리 분석하고 예측하지 않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공안부를 거친 한 부장급 검사는 “검찰 형사부한테 이런 집단행동을 맡겨두면 행위 결과가 나

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되면 화물연대 파업처럼 대규모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방법이 없다"며 "앞으로 노동운동이 안정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공안부에 맡겨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노동사건을 공안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두고 이념적 뿌리를 거론하는 검사들도 있다. 학원, 노동, 시민운동은 겉으로 각각 따로 있지만, 밑에서 서로 뿌리가 맞닿아 있어 이들을 묶어 봐야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한 행위자 처벌로는 집단행동이나 분규에 대응할 수 없으니, 공안부에 묶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실 검찰 공안부에 노동사건을 담당하게 된 연원이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공안적 시각, 즉 '반체제 세력의 선동에 따른 사회 소요'로 바라보았던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합리적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고 억압할 때 노동자들에게 친북이적성의 허울을 씌워 탄압하는 것만큼 쉽고 편한 것이 없었다. 물론 일부 좌익세력이 노동운동에 침투해 세력화를 도모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중심은 정치적 요구가 아닌 생존권적 요구였다. 지금도 민주노총의 핵심적 요구는 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세계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도 노동운동은 있게 마련이라는 점이고, 노동운동과 친북이적성을 같은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현재 검찰 공안부가 노동 분야 사건을 전담하면서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도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검찰은 노동관계법을 어긴다면 노동자든 사용자든 모두 처벌한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노동자 가운데 검찰이 양쪽을 공정하게 다룬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공안부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자들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곳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잘못으로 고정된 이미지를 지금의 공안부는 과연 벗어날 수 있을지, 아니 무엇보다 먼저 벗어나려는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 일부에서는 노동사건을 일반 형사부에 따로 떼어내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는 것이다. 일반 형사부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식품, 환경, 건축 등 전문 분야를 갖고 있다. 사실 노동운동 일반에 대한 관리는 검찰의 몫이 아니라 노동부의 몫이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자격을 갖추고 있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강제수사도 가능하다.

그리고 집단행동의 경우, 항상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인데 이를 일반화시켜 검찰 공안부라는 일상적인 조직체계를 둘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필요한 경우 각 특수상황에 맞게 경찰과 검찰이 함께 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3~4월 탄핵반대 촛불집회 당시

검찰 공안부가 얼마나 일처리를 잘해, 공공의 안전을 잘 지켰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4.

선거 문제는 사실 큰 논란거리가 아니다. 검찰 공안부에서 하지 않아도 일반 형사부에서 처리하면 그만이다. 매년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거가 있을 경우 선관위 등의 고발을 받아 관련자 불러 조사하고 처리하면 된다.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 공안부가 선거사범을 전담해야 한다고 하지만, 형사부도 얼마든지 전국적 통일성을 가질 수 있다.

5.

그래서 결국 남는 것은 대공(친북이적성) 영역이다. 이 문제는 결국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로, 국가보안법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남북대치 상황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한 관계가 혁명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남북대치 상황은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안이 '전공과목'이 아니면서도 공안업무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는 "대북 관계에 대한 인식이 공안부 존치 문제를 반 이상 결정한다. 남북화해 시대로 북한이 더 이상 위협세력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지만, 체제의 안전 문제는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생존의 문제는 한번 실수하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값이 비싸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따라서 지금의 공안부 대공 기능은 남겨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부 출신으로 공안부를 거쳤던 부장급 검사는 한걸음 정도 나아갔다. 그는 "공안부가 지금처럼 친북 이적성 수사에 주력하고 있을 수는 없다. 시대 변화에 따라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 질서와 시장경제질서 수호를 위해 일하는 부서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현행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뒷받침될 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현재 검찰 공안부는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공안부 고유 영역으로 자부했던 대공수사에서 참담한 실패를 맞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송두울 교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공안부 안에서는 당장 "이제 대공 수사는 끝났다"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송 교수가 북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기소 내용에 대해 법원이 다른 형사사건과 동일한 엄격한 증거조사 방법을 적용한 때문이다. 기소 내용의 핵심 내용이 북한에서 이뤄진다는 대공사건의 특성상 검찰은 기소하면서 확정적 증거를 제시하기 힘들었고, 법원은 이제껏 증거 부분에 있어 '관대한' 태도를 보여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 관례였다. 이제 송교수 사건을

계기로 이런 관례가 깨짐에 따라, 공안검사들 사이에는 “이제 김정일 증인조서 받아오지 않으면 유죄 받을 길이 끊겼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혼란까지 겹쳐 결국 국가보안법 문제가 정치권과 사회에서 풀리지 않으면 공안부의 방황은 끝날 수 없어 보인다. 국가보안법이 개정돼 북한에 대해, 그리고 이적행위에 대해 새롭게 규정한 뒤에야 공안부는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음은 공안검사들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혹시 국가보안법 완전폐지로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이 사라진다면, 대검 공안부도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6.

마지막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안부 폐지론에 대해 검사들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일단 국가작용에 있어 프랑스와 독일 등 선진국도 검찰에 공안기능을 두고 있다는 점을 논거로 들어, 국가의 공안기능을 언제나 필요하다는 말한다. 시대가 바뀌어 공안의 주요한 내용이 바뀔 수는 있어도, 그 자체를 없앨 수 없는 마당에 공안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수부 출신으로 공안부를 잠시 거친 한 부장검사는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공안부의 위상과 정체성을 찾아야 하지만, 과도기의 혼란을 이유로 이를 없애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독을 깨는 일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공안부를 한번 없앤 뒤 다시 새로운 공안기능을 갖는 조직을 만들려면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80년대 공안부가 저질렀던 잘못 때문에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역시 특수수사 전공으로 공안부를 거친 한 부장급 검사는 “공안부 일을 해보기 전에는 공안부가 보고서만 쓰고 논다고 해서 ‘공한부’라고 불렀다. 그런데 막상 공안부 일을 해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하는 일도 많고 유지할 필요도 느꼈다. 다만, 공안부도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 공안부도 노동사건 수사하면서 노동자 권익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인간의 얼굴을 한 공안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특수수사 전공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 공안부가 철저히 낭비라고 말하고 있다. “공안부 쪽에서는 범죄 예방을 내세운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예방기관이 아니다. 준법의식 고양은 법무부 일이고, 범죄예방은 경찰이 한다. 검찰은 수사하고 공소유지하는 기관일 뿐이다. 예컨대, 공안부에서는 동향정보를 수집하는데, 동향정보 수집한다고 범죄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다. 예방한다

고 나섰다가 노동사건에 제3자 개입해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같은 일만 생긴다. 동향정보 수집이란 것도 경찰과 국정원이 올린 정보를 분석하는 정도인데, 전혀 쓸모없는 정보다. 검찰은 범죄정보만 수집하면 그만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안부의 효율성을 따지기도 했다. "서울지검 공안1,2부에 부장검사를 포함해 모두 13명의 검사가 있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거기서 새로 인지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다. 모두 선관이 고발사건만 처리했다. 기업체 경영진단 하는데, 검찰 공안부도 경영진단 같은 것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결국 수사지휘와 공소유지가 핵심인데, 과연 사건을 얼마나 하는지 묻고 싶다. 검찰을 위해선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잘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일 벌리고 자기들끼리 바쁘다고 한다"

이런 내부의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 공안부는 대답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대검 공안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대통령이 하루 아침에 마음만 먹으면 그만이다. 법개정 사안도 아니다.

<끝>